

세종특별자치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
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2026년 09월 18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위원장

1. 조 례 명 : 「세종특별자치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안이유

- 현행 조례는 농기계 임대기간과 함께 출고·입고 시각 등 세부적인 운영 기준까지 규정하고 있어 영농여건의 변화, 계절별 수요 증가 등 다양한 현장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이에 농기계 임대기간에 관한 기본원칙은 조례에서 규정하되, 구체적인 운영 기준은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영농인의 편의를 증진하며 농기계 임대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 또한, 임차인의 의무 위반 및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질서 저해 행위 등에 대한 조치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농기계의 안전한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민원 처리 과정에서 제출받는 구비 서류를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시민 편의를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용어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임대신청인과 임차인을 구분하여 정의함(안 제3조제4호 및 제5호).
- 나. 공익 목적 농기계 지원, 기관 요청 시 전액 감면, 조기 반환 시 주말·공휴일분 미반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5조제2항, 안 제10조제1항제1호나목, 안 제11조제1항제4호).
- 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임대 및 임대료 감면 자격 확인이 가능한 경우 증명서 또는 증빙 서류 제출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함 (안 제6조제2항, 안 제10조제2항).
- 라. 농기계 임대기준을 실제 운영 상황에 맞게 현실화하고 그 외에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1항~제5항).
- 마. 임대계약의 제한 등 세부기준에 대해 위반행위의 정도와 횟수 등을 고려하여 운영세칙을 정할 수 있도록 명시함(안 제15조제2항).
- 바. 임대료 산정 기준과 임대차계약서의 사용조건,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등 해당 별표를 삭제하고 별지 제2호서식부터 제4호서식까지를 개정함.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년 09월 23일

나. 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담당

- 주소 : (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 FAX : (044) 300-7219 / E-mail : hocandy@korea.kr

라. 문의처 : (044) 300-7313

붙임 : 세종특별자치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세종특별자치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호(중전의 제4호) 중 “농기계를 임차하는”을 “일정 기간 농기계를 임차한”으로 한다.

4. “임대신청인”이란 농기계를 임차하기 위하여 임대 서비스를 신청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의2제2호 중 “수리”를 “정비”로 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임대사업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의 요청에 따라 농기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임차인”을 “임대신청인”으로, “하며, 농기계 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정하여 농기계를 임대할 수 있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농기계 출고 전에 실시하는 농기계 안전교육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제6조제2항 본문 중 “임차인은”을 “임대신청인은”으로, “확인 할”을 “확인할”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소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임대신청인으로 하여금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제2항 단서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같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6조제3항 중 “굴삭기”를 “굴착기”로 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임차인 1명이 임대”를 “임대신청인 1명이 임차”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임대”를 “임차”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임차인이 금요일”을 “금요일”로, “임대하여”를 “임차하여”로, “공휴일을 포함하여 임대할”을 “공휴일이 포함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

① 농기계 임대사업의 형평성과 운영 질서 확립을 위하여 접수 순서에 따라 임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임차 예약은 사용일 기준 14일 전부터 할 수 있다.

③ 임대기간 계산은 1일 단위로 하되, 1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다만, 영농 편의를 위하여 전날 오후 2시부터 출고할 수 있

다.

⑤ 농기계의 출고·입고 시각, 예약방법 및 그 밖에 임대사업의 이용 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영농 편의 및 농기계의 효율적인 운영을 고려하여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임차인이 농기계를 임차하려면”을 “임대신청인은”으로, “작성”을 “작성하고, 농기계 안전 사용법 및 준수사항에 대한 설명을 청구한 후 상차하여 이동”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별표”를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임대사업 시행기준’”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중 “백원 단위가 오백원 이상인 경우에는 절상한다”를 “천원 미만의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절상하여 천 원 단위로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임대료의”를 “임대료”로, “임대한”을 “임차한”으로 한다.

1. 전액감면

가. 재난·재해 복구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소장이 인정하는 경우
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이 공익 목적으로 공문을 통해 요청하는 경우

② 임대료 감면을 받으려는 임대신청인은 별지 제3호서식의 감면신청서에 감면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소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국가유공자확인서,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임대신청인으로 하여금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같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1조제1항제4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7조제4항에 따라 임대료가 부과된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임대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3조제1항 중 “임대하는”을 “임차하는”으로 한다.

제1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1년의 범위에서 임대차 계약”을 “임대차계약”으로, “있으며,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임대 제한 세부 기준을 정해 별도로 시행한다”를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1호 전단 중 “사람으로 1회에 1일 이상 초과한 경우가 3회 이상인”을 “이력이 있는”으로 하고, 같은 호 후단을 단서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지체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15조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농기계를 청소 및 세척하지 않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임대 제한기간 등 세부기준은 위반행위의 정도와 횟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농기계의 훼손 정도 및 임대사업 운영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하여 소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8조제3항 중 “지원 할”을 “지원할”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자로”를 “사람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을 단서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전화 예약자는 출고 당일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다.

제19조제3항 중 “출고시”를 “출고 시”로 한다.

별표를 삭제하고,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9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제4호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체결하는 농기계 임대차계약부터 적용한다.

제3조(임대계약 제한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제한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지 제2호서식]

농기계 사용 임대차 계약서(제8조제1항 관련)

임대인 세종특별자치시장	임차인				
	주소				
	성명		연락처		
			생년월일		
임대농기계					
농기계명		임대료		관리번호	
임대차기간				임대일수	
임대료	원			입금일자	년 월 일
농기계 사용계획					
작업종류				작업지역 및 면적	

- 사 용 조 건 -

1. 임차인은 현장에서 농기계 안전교육을 이수한 후 임대한 농기계를 내 것처럼 아껴서 사용한다.
2. 사용 후 보관할 때는 깨끗이 세척한 후 안전한 창고에 보관한다.
3. 운전 미숙, 부주의 등 임차 후 발생한 고장 수리비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4. 임차한 농기계 사용 중 인적 및 물적 피해 발생 시 임차인이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5. 사용 중 농기계를 분실 또는 파손하였을 때에는 임차인이 보상한다.
6. 임대차 기간이 끝나면 깨끗이 세척한 후 반납한다.
7. 임대차 기간 중 농기계의 유지, 보수 및 기본 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 (수리비, 연료비, 농작업 상해공제 등)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8. 임차인은 농기계를 시 관외로 반출하여 사용할 수 없고, 시 관외로 반출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임대사업소로 운반하는 비용을 포함한다)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세종특별자치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제13조, 제15조에 따라 위의 사용조건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고, 위와 같이 농기계 사용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합니다.

위와 같이 농기계 사용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년 월 일
임차인 :

부대품	
출고일시	

임대인 : 세종특별자치시장 (인)

[별지 제3호서식]

농기계 임대료 감면신청서(제10조제2항 관련)

성명	생년월일	
주소		
임차장비 및 기간	기종명(형식)	
	사용기간	
임대료	원	감면비율 전액, 반액
감면신청 사유		
「세종특별자치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감면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감면 대상자 증명서 또는 증빙자료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 국가유공자확인서 ☐ 장애인증명서 ☐ 한부모가족증명서 ☐ 기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해당 첨부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임대 농기계 운반대행 서비스 지원 신청서(제19조제2항 관련)

신청자	운반 주소지			
	성명		연락처	
	생년월일		운반농기계	
	출고일		반납일	

☐ 임대 농기계 운반대행 서비스 이용 시 임차인 준수사항

1. 임대 농기계 운반대행 서비스 신청은 본인이 직접 예약·신청하여야 하며, 임차인은 시 지정 배송업체와 임대 농기계의 정확한 배송장소 등 세부사항을 협의한다.

2. 시 지원금을 제외한 자부담금은 임차인이 운송업체에 직접 지불하여야 한다.

3. 운반대행 서비스 신청 농가는 해당 임대사업장에 동행하여 출고 시 농업기계의 이상 유무 점검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임차하여야 하며, 출고 후 임대 농기계 사고에 대한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다.

4. 임대 농기계는 임차인이 작업현장에서 직접 (상·하차)하여야 하며, 반환 시 청소 및 세척을 완료 후 사용일 오후 5시까지 임대사업소에 내방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 운반서비스 지원과 관련된 본인의 상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임대 농기계 운반대행 서비스 지원』을 신청하며, 허위로 사업 신청 시 지원금 회수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생략) <u><신설></u> 4. “임차인”이란 임대사업소에 서 임대료를 납부하고 <u>농기계를 임차하는</u> 사람을 말한다. 5.·6. (생략)	제3조(정의) ----- -----. 1. ~ 3. (현행과 같음) 4. “ <u>임대신청인</u> ”이란 <u>농기계를 임차하기 위하여 임대 서비스 를 신청하는</u> 사람을 말한다. 5. ----- -- <u>일정 기간 농기계를 임차 한</u> -----. 6.·7. (현행 제5호 및 제6호와 같음)
제3조의2(기능) 농기계 임대사업 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 다. 1. (생략) 2. 농기계의 <u>수리</u> 및 관리에 관 한 사항 3. ~ 5. (생략)	제3조의2(기능) ----- ----- --. 1. (현행과 같음) 2. ----- <u>정비</u> ----- ----- 3. ~ 5. (현행과 같음)
제5조(임차인의 자격) (생략) <u><신설></u>	제5조(임차인의 자격) ① (현행 제 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u>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임대사업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u>

제6조(임대조건) ① 임차인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하는 농기계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농기계 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정하여 농기계를 임대할 수 있다. 다만, 농기계 출고 전 실시하는 농기계 안전교육으로 농기계 교육을 대체할 수 있다.

② 임차인은 제5조에 따른 임차인의 자격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임대사업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후단 신설>

③ 농업용 굴삭기는 해당 기종에 대한 면허소지자 또는 소형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취득자에

또는 공공기관 등의 요청에 따라 농기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임대조건) ① 임대신청인-----한다. 다만, 농기계 출고 전에 실시하는 농기계 안전교육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② 임대신청인은 ----- 확인할 -----
---. 다만, 소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임대신청인으로 하여금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 굴착기-----

한정하여 임대한다.

제7조(임대기준) ① 소장은 임대 신청 접수 순서에 따라 농기계를 임대한다.

② 임차인 1명이 임대할 수 있는 같은 종류의 농기계의 수는 1대로 한정하고, 최대 3일까지 임대할 수 있다. 다만, 소장은 임대를 신청한 대기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농기계의 임대차 기간 계산은 제6항에 따라 사용일 전날 오후 농기계의 출고 시각부터 사용일 다음날 오전 입고 시각까지를 1일로 계산한다.

④ 임차인이 금요일 또는 공휴일 직전 근무일에 농기계를 임대하여 임대차 기간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포함하여 임대할 경우에는 해당 일수에 대한 임대료를 납부해야 한다.

⑤ 농기계 임대 예약은 사용일

-----.

제7조(임대기준) ① 농기계 임대 사업의 형평성과 운영 질서 확립을 위하여 접수 순서에 따라 임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임차 예약은 사용일 기준 14일 전부터 할 수 있다.

② 임대신청인 1명이 임차-----

-----.
임차-----

-----.

③ 임대기간 계산은 1일 단위로 하되, 1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다만, 영농 편의를 위하여 전날 오후 2시부터 출고할 수 있다.

④ 금요일 ----- 임차하여 -----
--- 공휴일이 포함되는 ---

-----.

⑤ 농기계의 출고·입고 시각,

기준 14일 전부터 3일 전까지
전화 또는 방문 예약해야 한다.

⑥ 농기계 임대 이용 시각은 다
음 각호와 같다.

1. 출고시각 : 사용일 전날 오후
2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한다.

2. 입고시각 : 사용일 다음날 오
전 9시부터 오전 11시까지로
한다. 다만, 농업기계 사용종
료일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첫 번째 비휴무일까지
입고해야 한다.

제8조(사용신청 및 임대료 징수)

① 임차인이 농기계를 임차하려
면 임대사업소를 방문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계약서를 작성해
야 한다.

② (생략)

제9조(임대료 등) ① 농기계의 임
대료는 별표에 따른다.

예약방법 및 그 밖에 임대사업
의 이용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
은 영농 편의 및 농기계의 효율
적인 운영을 고려하여 운영세칙
으로 정한다.

<삭 제>

제8조(사용신청 및 임대료 징수)

① 임대신청인은 -----

----- 작성하
고, 농기계 안전 사용법 및 준수
사항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상차하여 이동---.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임대료 등) ① -----
-----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
행규칙」 별표 1의2 ‘임대사업

② ~ ④ (생략)

제10조(임대료의 감면) ① 소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임대
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별지 제3호서식의 감
면신청서에 감면대상자임을 증
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전액감면: 재해·재난복구 등
소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

2. 반액감면: 다음 각 목에 해당
하는 자로서 본인의 영농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이 경우
감면받아 납부하는 임대료의
백원 단위가 오백원 이상인
경우에는 절상한다.

가. ~ 라. (생략)

<신설>

시행기준'---.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0조(임대료의 감면) ① -----

-----<후단 삭제>

1. 전액감면

가. 재난·재해 복구 등 공익
상 필요하다고 소장이 인
정하는 경우

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이 공익 목적
으로 공문을 통해 요청하
는 경우

2. -----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

천 원 미만의 금액이 있는 경
우에는 이를 절상하여 천 원
단위로 한다.

가. ~ 라. (현행과 같음)

② 임대료 감면을 받으려는 임

② 임대료의 감면을 받은 임차인이 농기계를 임대한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경우에는 감면받은 임대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11조(임대료의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1. ~ 3. (생략)
4. 농기계의 임대차 기간 만료

대신청인은 별지 제3호서식의 감면신청서에 감면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소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국가유공자확인서,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임대신청인으로 하여금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같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임대료 -----
----- 임차한 -----

-----.

제11조(임대료의 반환) ① -----

-----.

1. ~ 3. (현행과 같음)
4. -----

일 전에 농기계를 반환하는
경우 <단서 신설>

② (생략)

제13조(임차인의 책임 및 변상)

① 임차인은 농기계를 임대하는
기간 동안 농기계 사용에 따른
준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② ~ ⑤ (생략)

제15조(임대계약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임대차 계약을 제한할 수 있으
며,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임대
제한 세부 기준을 정해 별도로
시행한다.

1. 임대차 기간을 초과하여 농
기계를 반납한 사람으로 1회
에 1일 이상 초과한 경우가 3
회 이상인 경우. 이 경우 천재
지변으로 인하여 지체된 일수
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2. 3. (생략)

4. 제14조제1항에 따른 농기계

경우. 다만, 제7조제4항에 따
라 임대료가 부과된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임대
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임차인의 책임 및 변상)

① ----- 임차하는 -

-----.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5조(임대계약의 제한) ① ----

----- 임대차계약-----
----- 있다.

1. -----
----- 이력이 있는 --

----- . 다만, 천재지
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지체된 경우는 제외한다.

2. 3. (현행과 같음)

4.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농

를 반환하면서 청소 및 세척을 하지 않고 반환한 횟수가 4회 이상인 경우

<신 설>

제18조(농기계 운반대행) ①·②
(생 략)

③ 시장은 농기계 운반대행 수수료(이하 “운반료”라 한다)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운반대행 사업은 형평성을 고려하여 농가당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19조(운반대행 신청) ① 제18조 제1항에 따른 운반대행 신청자는 시에 거주하고 시에 경작지가 있는 농업인 중 임대사업 회원가입이 완료된 자로 한다.

② 운반대행 신청자는 사전에 장비 임대 가능 여부, 일정 등을

기계를 청소 및 세척하지 않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임대 제한기간 등 세부기준은 위반행위의 정도와 횟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농기계의 훼손 정도 및 임대사업 운영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하여 소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8조(농기계 운반대행)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지원
할 -----

-----.

제19조(운반대행 신청) ① -----

----- 사람으로 -----
-----.

② -----

제7조제5항에 따라 전화 또는 방문하여 운반대행을 예약하고,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신청한다. <u>다만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전화 예약자는 출고 당일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다.</u> ③ 운반대행 신청자는 임대장비 <u>출고시</u>에 임대사업소에 방문하여 농업기계 안전사고 예방과 취급·조작 요령 교육을 미리 이수해야 한다.	----- ----- ----- ----. <u>다만,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전화 예약자는 출고 당일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다.</u> ③ ----- <u>출고 시</u>----- ----- ----- -----.
---	---

관 계 법 령

□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8조의2(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촉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자(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그 농업기계의 구입 및 운송(임차인에게 농업기계를 전달하거나 임차인으로부터 농업기계를 회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부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6. 12., 2018. 12. 24.>

②~⑥ (생략)

□ 「전자정부법」

제36조(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수집·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필요로 하는 다른 행정기관등과 공동으로 이용하여야 하며, 다른 행정기관등으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행정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내용의 정보를 따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정보를 수집·보유하고 있는 행정기관등(이하 “행정정보보유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다른 행정기관등과 「은행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은행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으로 하여금 행정정보보유기관의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5. 17.>

③~⑥ (생략)

제42조(정보주체의 사전동의) ① 이용기관이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의 정보주체(이하 “정보주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 수 있도록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1호·제19조제1호·제23조제1호 및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1. 3. 29., 2014. 1. 28.>

1. 공동이용의 목적
2.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및 이용범위
3. 공동이용 대상 이용기관의 명칭

②~③ (생략)

[붙임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세종특별자치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제2호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4. 작성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윤 성 규

현행조례

세종특별자치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시행 2026. 2. 27.] [조례 제2985호, 2026. 2. 27., 일부개정]

세종특별자치시특화자원과(특화자원과) 044-301-25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8조의2에 따라 농기계의 이용률 향상과 농업기계화 촉진을 통한 농업의 생산성 향상 및 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농기계 임대사업소(이하 “임대사업소”라 한다)는 세종특별자치시 농업기술센터(이하 “농업기술센터”라 한다)에 두며, 필요한 경우 분점을 둘 수 있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기계”란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를 말한다.
2. “임대사업”이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가 농기계를 농업인에게 유상으로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임대료”란 농업인이 농기계 사용의 대가로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임차인”이란 임대사업소에서 임대료를 납부하고 농기계를 임차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농기계 운반대행”이란 특수장비 차량을 이용하여 임대 농기계를 농작업장까지 운반해 주는 것을 말한다.<신설, 2025. 3. 7.>
6. “농기계 운반대행 수수료”란 농기계 운반의 대가로 부과·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신설, 2025. 3. 7.>

제3조의2(기능) 농기계 임대사업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농기계의 임대 및 임대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2. 농기계의 수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농기계 실수요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
4. 임대농기계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5. 3. 7.]

제4조(운영 및 관리) ① 시장은 임대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고, 임대사업 운영에 따른 농기계 사고에 대비하여 농기계종합공제에 가입해야 한다.<개정, 2025. 3. 7.>

- ② 임대사업소의 농기계 등 장비 및 부속건물 운영과 관리는 시장의 명을 받아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한다.
- ③ 소장은 임차인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농기계 취급·조작 요령에 관한 사전 교육과 농기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 다음 농기계를 임대해야 한다.<개정, 2025. 3. 7.>
- ④ 소장은 임대사업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농기계마다 별지 제1호서식의 농기계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해야 한다. 다만, 전산서식을 활용할 경우에는 전산서식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개정, 2025. 3. 7.>
- ⑤ 소장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기계의 수요조사를 실시하는 등 지역 실정에 맞는 농기계가 임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5. 3. 7.>
- ⑥ 소장은 농기계의 내용연수가 경과하거나 파손 및 망실 등으로 매각 또는 폐기 처분을 할 경우에

는 임대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하여 대체 농기계를 구입해야 한다.<개정, 2025. 3. 7.>

제5조(임차인의 자격) 임차인의 자격은 시 지역에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한다.[전문개정, 2021. 11. 15.]

제6조(임대조건) ① 임차인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하는 농기계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농기계 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정하여 농기계를 임대할 수 있다. 다만, 농기계 출고 전 실시하는 농기계 안전교육으로 농기계 교육을 대체할 수 있다.<개정, 2025. 3. 7.>

② 임차인은 제5조에 따른 임차인의 자격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임대사업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5. 3. 7.>

③ 농업용 굴삭기는 해당 기종에 대한 면허소지자 또는 소형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취득자에 한정하여 임대한다.

제7조(임대기준) ① 소장은 임대 신청 접수 순서에 따라 농기계를 임대한다.

② 임차인 1명이 임대할 수 있는 같은 종류의 농기계의 수는 1대로 한정하고, 최대 3일까지 임대할 수 있다. 다만, 소장은 임대를 신청한 대기가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농기계의 임대차 기간 계산은 제6항에 따라 사용일 전날 오후 농기계의 출고 시각부터 사용일 다음날 오전 입고 시각까지를 1일로 계산한다.<개정, 2025. 3. 7.>

④ 임차인이 금요일 또는 공휴일 직전 근무일에 농기계를 임대하여 임대차 기간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포함하여 임대할 경우에는 해당 일수에 대한 임대료를 납부해야 한다.

⑤ 농기계 임대 예약은 사용일 기준 14일 전부터 3일 전까지 전화 또는 방문 예약해야 한다.<신설, 2025. 3. 7.>

⑥ 농기계 임대 이용 시각은 다음 각호와 같다.<신설, 2025. 3. 7.>

1. 출고시각 : 사용일 전날 오후 2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한다.

2. 입고시각 : 사용일 다음날 오전 9시부터 오전 11시까지로 한다. 다만, 농업기계 사용종료일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첫 번째 비휴무일까지 입고해야 한다.

제8조(사용신청 및 임대료 징수) ① 임차인이 농기계를 임차하려면 임대사업소를 방문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개정, 2025. 3. 7.>

② 임대료 징수에 관하여는 시의 재무회계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임대료 등) ① 농기계의 임대료는 별표에 따른다.

② 임대료는 소장이 1일 기준으로 부과·징수한다.

③ 농기계를 임대하는 경우 유류대 등 농기계 사용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④ 소장은 임차인이 농기계를 임대차 계약서의 임대차 기간 만료일시까지 반환하지 아니하는 등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지연일수에 따라 임대료를 추가 징수해야 한다. 이 경우 소장은 계약을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추후 임대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5. 3. 7.>

제10조(임대료의 감면) ① 소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별지 제3호서식의 감면신청서에 감면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5. 3. 7.>

1. 전액감면: 재해·재난복구 등 소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반액감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본인의 영농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이 경우 감면받아 납부하는 임대료의 백원 단위가 오백원 이상인 경우에는 절상한다.<개정, 2025. 3. 7.>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신설, 2025. 3. 7.>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신설, 2025. 3. 7.>

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신설, 2025. 3. 7.>

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신설, 2025. 3. 7.>

② 임대료의 감면을 받은 임차인이 농기계를 임대한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경우에는 감면받은 임대료를 납부해야 한다.<개정, 2025. 3. 7.>

제11조(임대료의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개정, 2021. 11. 15.><개정, 2025. 3. 7.>

1. 임차인이 농기계 출고 전에 임대차 계약을 취소한 경우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농기계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3. 시장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농기계의 임대차 계약을 취소한 경우
4. 농기계의 임대차 기간 만료일 전에 농기계를 반환하는 경우<신설, 2021. 11. 15.>
-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하는 임대료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 임대료 전액
2.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사용일을 제외한 잔여일의 임대료<개정, 2021. 11. 15.>

제12조(임대계약의 취소) ①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 중에도 임대차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임차인이 농기계를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2. 농기계의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재임대한 경우
3. 농기계를 영업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
- ② <삭제, 2026. 2. 27.>

제13조(임차인의 책임 및 변상) ① 임차인은 농기계를 임대하는 기간 동안 농기계 사용에 따른 준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개정, 2025. 3. 7.>

- ② 농기계를 도난 방지 등을 위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 및 관리해야 한다.<개정, 2025. 3. 7.>
- ③ 임차인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의나 관리 의무를 태만히 하여 농기계가 망실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에는 이에 상응한 금액으로 변상 또는 원상회복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망실 또는 훼손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5. 3. 7.>
- ④ 농기계가 출고된 후 임차인의 과실로 발생하는 인적·물적 피해사고에 대해서는 임차인의 책임으로 한다.
- ⑤ 임차인은 농기계를 시 관외로 반출하여 사용할 수 없고, 시 관외로 반출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임대사업소로 운반하는 비용을 포함한다)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제14조(농기계의 반출 및 반환) <개정, 2025. 3. 7.>

- ①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어 농기계를 반환할 때에는 깨끗이 청소 및 세척하여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반환해야 한다.<개정, 2025. 3. 7.>
- ② 소장은 제13조 임차인의 책임 및 변상과 관련하여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임차인이 농기계를 반출, 반환할 때에는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하며 이상 유무 확인 목록표는 별도로 운영한다.<개정, 2025. 3. 7.>

제15조(임대계약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임대차 계약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임대 제한 세부 기준을 정해 별도로 시행한다.<개정, 2025. 3. 7.>

1. 임대차 기간을 초과하여 농기계를 반납한 사람으로 1회에 1일 이상 초과한 경우가 3회 이상인 경우. 이 경우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지체된 일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제13조에 따른 임차인의 책임 및 변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4조제1항에 따른 농기계를 반환하면서 청소 및 세척을 하지 않고 반환한 횟수가 4회 이상인 경우

제16조(농기계 처분) 농기계의 내용연수가 경과한 농기계,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농기계 또는 수리비가 농기계평가액을 초과한 농기계에 대하여는 「세종특별자치시 물품관리 조례」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에 따라 불용처리를 할 수 있다.

제17조(농기계임대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①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기계임대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임대사업 계획서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② 위원회는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정」 제2조에 따라 설치한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산·학협동

심의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전문개정, 2022. 12. 20.]

제18조(농기계 운반대행) ① 시장은 운반트럭 미보유, 부녀자, 노약자등 농기계 운반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대하여 농기계를 운반 대행(이하 “운반대행”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특수 장비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장소까지로 한다.

② 운반대행은 안전사고 위험성을 고려하여 상하차 및 수송 간의 위험성이 높은 농업기계와 탈부착이 필요한 작업기는 제외하고 중소형 농기계로 한정한다.

③ 시장은 농기계 운반대행 수수료(이하 “운반료”라 한다)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으며, 운반대행 사업은 형평성을 고려하여 농가당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3. 7.]

제19조(운반대행 신청) ① 제18조제1항에 따른 운반대행 신청자는 시에 거주하고 시에 경작지가 있는 농업인 중 임대사업 회원가입이 완료된 자로 한다.

② 운반대행 신청자는 사전에 장비 임대 가능 여부, 일정 등을 제7조제5항에 따라 전화 또는 방문하여 운반대행을 예약하고,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신청한다. 다만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전화 예약자는 출고 당일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③ 운반대행 신청자는 임대장비 출고시에 임대사업소에 방문하여 농업기계 안전사고 예방과 취급·조작 요령 교육을 미리 이수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5. 3. 7.]

제20조(운반대행 위탁) ① 시장은 운반대행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기계 운반이 가능한 전문업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운반대행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업체에 위탁해야 한다.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에 따라 운영하는 업체

2. 1톤 이상 상하차 가능한 화물차량 또는 구난형 특수자동차를 확보하고 있는 업체

[본조신설, 2025. 3. 7.]

제21조(운영 위탁) ① 시장은 임대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임대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업기계화사업에 전문성과 농기계 수리시설을 갖춘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의 절차와 방법 등은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2. 8. 22.]

제2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임대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장이 따로 정한다.

[제21조에서 이동, 2022. 8. 22.]

부 칙 (조례 제1272호, 2019. 4.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4항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대료 부과·징수를 위한 임대차 기간 계산 및 임대료 무료 농기계에 관한 경과조치) 임대료 부과·징수를 위한 임대차 기간 계산 및 임대료 무료 농기계에 관하여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제7조제4항 및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 칙 <조례 제1417호, 2019. 11. 15.>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714호, 2021. 7. 15.>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치·운영 중인 위원회 위원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 중 같은 위원회에 6년 초과 연임 또는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참여하고 있는 위원은 제5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회 임기의 남은 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94) (생략) (95) 세종특별자치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96) ~ (168) (생략)

부 칙 <조례 제1831호, 2021. 1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978호, 2022. 8.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047호, 2022. 12.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732호, 2025. 3.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985호, 2026. 2. 27.>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